

☎ 0437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6-4487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/ 의무팀장 이재용(6540)/ 과장 김철욱(6536)/ E-mail: leokma0817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22-08644호

시행일자 2021. 10. 21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코로나19 의약품 처방 관련 업무협조 요청(식품의약품안전처)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-9761(2021.10.18)

3.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코로나19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‘피라맥스정(피로나리딘염산염, 알테수네이트)’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협회로 협조를 요청해온 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-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된 의약품은 ‘베클루리주(렘데시비르)’와 ‘렉키로나주(레그단비맵)’ 2품목이며, 그 외 의약품은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안전성·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음.
- 의료기관에서는 위 2품목 외의 의약품을 코로나19 예방·치료 목적으로 처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

붙임 :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. 끝.

대한 의 사 협 회 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를사협의회장